

##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.11.26. ~ 2018.12.02.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대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공고기간 : 2018. 12. 04. ~ 2018. 12. 09.
- 교섭요구 노동조합
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	전국대학노동조합 목원대학교지부	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원대학교연대 노동조합
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	김 영 준	노 종 석
교섭을 요구한 일자	2018. 11. 22.	2018. 11. 27.
조합원수(교섭요구일 현재)	85명	88명

-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목원대학교(참조 : 총무과)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12. 04.

목원대학교 총 장 권 혁

